「국제법무」 제11집 제1호, 2019. 5.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race Period for Patents

윤 기 승**
Yoon, Gi-Seung

목 차

Ⅰ. 서론
Ⅱ. 각국의 공지예외적용제도
Ⅲ. 공지예외적용제도의 개선 방안
Ⅳ. 결론

국문초록

본래의 특허제도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의 운영이나 특허분쟁 등의 이유로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공지예외적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고 또 증명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접수일 : 2019. 04. 03.
심사완료일 : 2019. 05. 03.
게재확정일 : 2019. 05. 08.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017S1A5B5A07061930).
** 법학박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에 공지예외적용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발명자 보호에 부적절하다는 견해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특허법도 특허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발명자가 공지예외적용제도를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개정 특허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미국처럼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디자인보호법에 있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에서처럼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도 그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한다.

또한 공지예외적용제도는 국가마다 기간이나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발명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발명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의 공지예외적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유예기간, 공지예외적용제도,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 상실제도,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 바운스백 특허

Ⅰ. 서론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발명을 한 발명자가 2012년 8월 27일에 이를 특허출원하여, 2013년 5월 22일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 지팡이 아이스크림은 서울 인사동에서 처음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관광객들은 이에 대한 인증샷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렸다.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선풍적인 인기를 안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인기에 편승하고자 부산, 군산 등에서 유사제품(미투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와 유사제품의 판매업자들 사이에 권리분쟁이 발생하였다. 즉, 특허권자가 유사제품의 판매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

이후 일부 판매업자는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신규성을 결여하였고, 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여 진보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3] 이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특허출원 전인 2012년 8월 13일에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맛을 본 소비자가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에 설치한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특허가 그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한 이상 그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결을 하였다.[4]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등의 음식물은 그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또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바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팡이 아이스크림 발명자는 그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먼저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했다.[5] 만약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이미 그러한 제품을 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할 때 공지예외적용과 관련된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2)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4일, 法, 인사동 '지팡이 아이스크림'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3) 이외에도 일부 판매업자는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기술의 실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 선고 2014당1286 심결).

4) 특허심판원 2014. 9. 30. 선고 2013당1869 심결.

5) 특허청 보도자료, 2014년 11월 27일, 선풍적 인기의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출원을 서둘렀어야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의 무효심결).

절차를 밟았더라면 그 특허권의 무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6]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애플의 특허권에도 발생되었다. 애플은 유럽에서 휴대기기에서 사진을 좌우로 넘겨보다가 마지막 사진을 넘기려고 하면 사진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용수철처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효과와 관련된 바운스백 특허(EP 2059868)를 받았고, 독일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를 상대로 자사의 바운스백 특허(EP 2059868)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Injunction)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무효 사유로는 스티브잡스가 2007년 1월에 있은 "맥월드 2007"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시연한 동영상(Keynote video)이 신규성 위반이라는 것이다.[7]

결국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8] 즉, 이는 미국은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공지된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되지만, 독일은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또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특허권이 무효가 된 것은 발명자(특허권자)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특허법에 존재하는 공지예외적용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명자들(특히 국내의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지예외적용제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지예외적용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허법 제30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6) 최근에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출원인은 특허출원 당시에 공지예외적용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ⅰ)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ⅱ)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7) IPcopy, 2013년 10월 4일, Steve Jobs, a Keynote video and US/DE grace periods. (https://ipcopy.wordpress.com/2013/10/04/steve-jobs-a-keynote-video-and-usde-grace-periods/).

8) 연합뉴스, 2013년 9월 27일, 아이폰공개 영상 탓 애플 바운스백 특허 독일서 무효.

Ⅱ. 각국의 공지예외적용제도

1. 우리나라의 경우

가. 공지예외적용의 개념

“공지예외적용[9]”이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그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자신의 발명이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한 공개로 인하여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가 그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10]

공지예외적용사유로는 (ⅰ)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와 (ⅱ) 자기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로 구분되며, 여기서 “자기 의사에 반한 공지”라 함은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협박, 강박 등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를 말한다.

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

9) 1986년 이전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의 의제”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특허법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본인공개예외”, “유예기간”, “신규성의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Non-prejudicial disclosure”로, 미국에서는 “Grace Perio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9년, 3228면.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

여기서의 "공지"라 함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한다.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고, 또 국제학술단체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므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의 제한이 완화되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모두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는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2012년 3월 14일 이전인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6월이었지만, 한·미 FTA로 인하여 그 기간이 12월로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개한 경우와는 달리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의 특허출원은 실제의 특허출원을 의미하므로, 외국에서 공지 등이 된 경우에도 선출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특허출원이 되어야 그 특허출원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특허출원(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하여야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관련하여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제도의 절차를 밟아 선출원이 된 경우라면 후출원(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 아니더라도 국내우선권주장의 절차가 적법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11]

다만, PCT 국제출원을 하며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국제출원일이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된 것이면 이는 공지예외적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된다. 또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일[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월 이내의 특허출원 기간은 분할출원일 또는 변경출원일이 아닌 원출원의 출원일(특허출원일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또 그 특허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11) 특허법 제55조 제3항("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5항(제132조의3제3항 또는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12)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53조 제2항 본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은 원출원일이 아니라 분할출원일 또는 변경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할 때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분할출원일 또는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13]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공지예외적용 기간은 선출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PCT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01조 제5항에 따른 기준일(국내서면제출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4]

2015년 7월 29일 시행 개정 특허법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라. 공지예외적용의 효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특허출원은 공지기술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공지

13) 특허법 제52조 제2항 단서, 동법 제53조 제2항 단서.

14) 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예외적용주장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지일과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한 특허출원 사이에 제3자가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공개하거나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등의 위반 등으로 거절될 수가 있다.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법한 경우 그 특허출원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허출원은 자신의 공지발명으로 인하여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이 되어 거절되거나, 또는 그 특허권은 이를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다.

2. 미국의 경우

가. 미국 특허법 제102(b)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였는데,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하 "AIA"라 함)[15]가 발효되면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특허제도를 변경하였다. 전통적인 선발명주의 하에서 신규성 및 비자명성(이하에서는 "진보성"이라 함)[16] 등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발명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발명 이후의 공개 행위가 신규성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특허출원일 이전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규정은 선발명주의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다.

다만, 선발명주의 하에서도 발명 이후에 조속한 특허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AIA 시행 전 미국 특허법 제102조(b)는 그 발명이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일보다 1년 이상 전에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 공중에 의해 사용되거나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7] 하지만 이 규정은 발명 이후에 조속한 특허출원을

15)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AIA)는 2011년 9월 16일 오마바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로서 2013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다.

16) 우리나라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보성은 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6)에서는 "inventive step(진보성)", 미국 특허법(35 USC §103)에서는 "non-obviousness(비자명성)"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공지예외적용제도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지예외적용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AIA 시행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게 된 미국은 이러한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지예외적용제도(Grace Period; 유예기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02조(b)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유효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공지가 된 경우, 그 공지가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그 발명자나 그 공동발명자로부터 공지된 발명을 지득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공지된 발명이 그러한 공지 전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 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그 발명자나 그 공동발명자로부터 공지된 발명을 지득한 제3자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공지된 경우에 그 공지는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18]

먼저 특허출원을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후에도 그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공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은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발명자가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따로 공지예외적용 주장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공지와 관련된 증명서류도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19]

---

17) 홍정표, "공지예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년, 44면.

18) 35 USC §102.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
(b) EXCEPTIONS.—
(1) DISCLOSURES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A disclosure made 1 year or les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a claimed invention shall not be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under subsection (a)(1) if—
(A) the disclosure was made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r by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B)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had, before such disclosure, been publicly disclosed by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or another who obtained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directly or indirectly from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나. 우리나라 특허법과의 차이점

미국 특허법은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하기 위한 기간이 1년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공지예외적용기간과 동일하지만, 1년이 되는 기산일에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 특허법이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출원일인 특허출원일(조약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에는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미국 특허법은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20]을 기준으로 한다.[21] 따라서 미국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은 미국의 실제출원일로부터 최대 2년 전에 공지된 발명까지 공지예외적용(Grace Period)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22]

미국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발명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허출원이 우리나라에서 출원공개가 된 후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다른 공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한 특허출원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23]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19) 정차호,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년, 41면.

20)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에 유효출원일은 실제의 출원일을 말하며, 국내우선권이나 조약우선권 또는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에 유효출원일은 국내우선권이나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선출원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유효출원일은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의 출원일을 말한다.

21) 이해영, 노지준, 권순익,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년, 253면.

22) 예를 들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공지를 한 후 그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하고 또 그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조약우선권주장출원), 미국 특허법의 공지예외적용(Grace Period)은 유효출원일(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자 자신의 공지는 미국에서 신규성 등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행기술이 되지 않는다.

23) 홍정표, 앞의 논문, 46면.

받기 위하여 그 취지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이러한 취지 기재나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미국은 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면 되고, 또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지(disclosure)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본인 공개 후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이러한 공지예외적용의 주장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만 하면 공지예외적용의 시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일본의 경우

가. 일본 특허법 제30조

일본 특허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지예외적용제도와 동일한 제도이다. 즉,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발명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특허법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일본 특허법은 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래 일본 특허법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기간이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6월이었는데, 최근 일본 특허법은 이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개정하였다.[24] 따라서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미국이

24) (発明の新規性の喪失の例外)
第三十条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意に反して第二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発明　は、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　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らなかつたものとみな す。
2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行為に起因して第二十九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至つた　発明（発明、実用新案、意匠又は商標に関する公報に掲載されたことにより同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　当するに至つたものを除く。）も、その該当するに至つた日から一年以

나 우리나라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1년과 동일하게 되었다.[25]

일본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공개된 발명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이든 아니면 권리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개된 발명이든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권리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개된 발명인 경우 특허출원인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하 "증명서"라 함)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특허법과의 차이점

우리나라 특허법과 달리, 일본 특허법은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증명서를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26] 다만 이 경우 출원인은 그 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6월 이내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재외자의 경우에는 재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증명서를 특허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그 기

内にその者がした特許出願に　係る発明についての同項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前項と同様とする。

25) 개정 일본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은 헤세이 30년(2018년) 6월 9일 시행 이후의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7년 12월 8일까지 공개된 발명은 공개된 날 이후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개정 특허법 제3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즉, 2017년 12월 9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규정인 6월이 적용되는 반면, 2018년 6월 9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12월 9일 이후에 공개된 발명은 개정 특허법을 적용하므로 발명자는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적용주장을 하면 된다.

26) 일본 특허법 제30조 제4항("証明書を提出する者がその責めに帰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により前項に規定する期間内に証明書を　提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理由がなくなつた日から十四日（在　外者にあつては、二月）以内でその期間の経過後六月以内にその証明書を特許庁長官に提出すること ができる。").

간(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6월 이내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공지예외적용 기간과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ⅰ)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ⅱ) 선출원에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나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른 특허출원과 관련된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27] 국내우선권주장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과 관련된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거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원출원의 출원일이 기준이 되지만, 원출원에서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특허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4. 유럽의 경우

가. EPC 제55조(Non-prejudicial disclosure)

유럽특허조약(EPC)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지예외적용제도는 기간이나 사유 등에서 우리나라 특허법과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유럽 특허청(EPO)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또 그 사유가 특허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과 관련된 명백한 해악(evident abuse)인 경우와 특허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이 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28]에 발명을 전시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29] 이

27)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205.pdf

28) 여기서 말하는 "국제박람회"는 1928년 11월 22일에 파리에서 서명되고, 1972년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박람회를 말한다.

29) EPC Article 55 Non-prejudicial disclosures
(1)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54, a disclosure of the invention shall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it occurred no earlier than six month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러한 공지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이 아닌 실제의 출원일인 유럽에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국제박람회에 발명을 전시한 경우, 유럽 특허청(EPO)을 통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발명을 전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그 발명이 국제박람회에 전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4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30]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에는 (ⅰ) 그 서류가 해당 전시회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시회에서 발행한 것일 것, (ii) 그 발명이 실제로 거기에 전시되었다는 설명이 있을 것, (iii) 전시 개시일을 명시할 것(만약 발명이 그 일자보다 늦게 공개된 경우에는 발명이 처음 공개된 날짜를 서술할 것), (iv)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된 발명의 증명서가 수반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우리나라 특허법과의 차이점

공지예외적용제도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조약이 우리나라 특허법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지의 종류이다. EPC는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월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12월로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지의 종류가 신규성 상실사유[31]로서 실질적으

European patent application and if it was due to, or in consequence of:
(a) an evident abuse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or his legal predecessor, or
(b) the fact that the applicant or his legal predecessor has displayed the inventio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sed, international exhibition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exhibitions signed at Paris on 22 November 1928 and last revised on 30 November 1972.

30) EPC Article 55 (2), EPC Rule 25(Certificate of exhibition).

31) 우리나라 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사유는 (1) 공지된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한다.

로 그 제한이 없는 반면, 유럽특허조약은 공지의 종류를 (ⅰ) 명백한 해악인 경우와 (ⅱ)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다.

EPO 심사지침서(Guidelines for Examination)[32]에 의하면, 여기서의 "명백한 해악"이라 함은 그 발명은 출원인으로부터 유래되었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공지는 출판된 문서로 공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지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의 발명을 은밀하게 알게 된 B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발명이 출원공개가 된 경우 그 출원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A가 한 특허출원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발명을 공개한 자의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유발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공개로부터 피해가 유발되거나 또는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야만 명백한 해악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33]

또한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경우, 이러한 발명의 전시가 특허출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박람회에 전시된 후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그 발명이 전시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간(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4월) 및 조건 하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국의 경우

가. 중국 전리법(이하 "특허법"이라 함) 제24조

중국 특허법 제24조는 공지예외적용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법 실시세칙 제30조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

32)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Part G, Chapter V(Non-prejudicial disclosure).
33) 안재범,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8면.

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공지사유로는 (ⅰ)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 (ⅱ)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ⅲ)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로 한정된다.[34]

중국 특허법 제24조의 공지사유 중 (ⅰ)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35]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와 (ⅱ)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36]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7] 그러므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국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ⅲ)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인에게 지정기간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8] 즉, 이 경우 누설한 방식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누설행위가 출원인의 의지나 지시에 반하면 공지예외적용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특허법과의 차이점

공지예외적용과 관련하여, 중국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지예외적용기간과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지사유이다. 즉, 중국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

34) 중국 특허법 제24조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一) 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二) 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三)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35)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라 함은 국무원이나 그 부서가 주최하거나 기타 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국제박람회를 말한다.

36)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라 함은 국무원의 관련부서나 전국적 학술단체가 주선하고 소집하는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를 말한다.

37)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30조 제5항.

38)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30조 제3항.

허출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지예외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지사유가 제한이 없는 반면, 중국 특허법은 (ⅰ)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경우, (ⅱ)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ⅲ)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로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1조[39]에 의하면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40]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출원인이 발명을 공지(중국 특허법에서의 공지사유에 해당됨을 조건으로 함)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이 특허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따라서 이 특허출원은 출원 전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로 거절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지예외적용과 관련하여 실제의 출원일인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국의 출원인이 중국에서 발명을 공지한 후 조약우선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출원인이 중국의 출원인보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공지예외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5. 기타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특허법에 공지예외적용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41], 그 규정들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국가들의 유형을 공지

39)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1조 除专利法第二十八条和第四十二条规定的情形外，专利法所称申请日，有优先权的，指优先权日。

40) 이 규정은 공지예외적용기간(6월)과 관련하여 우선일을 특허출원일로 본다는 것일 뿐, 서류제출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허출원이나 존속기간의 기산은 중국에서의 실제 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41) 다만, 사이프러스, 세인트루시아, 몽골과 시리아는 공지예외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살펴보면, 크게 (ⅰ)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 국가와 (ⅱ)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통계[42]를 보면, (ⅰ)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가[43]로는 유럽특허조약(EPC)을 따르는 유럽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일부의 국가들,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ⅱ)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가[44]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 말레시아 등 유럽특허조약(EPC)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다만, 남아프리카, 잠비아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특허출원을 하여야 할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기간으로서 상황에 따라 6월, 12월 또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역 기구별로 살펴보면,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zation; EPO)[45],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46], 아프리

42)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cp/en/national_laws/grace_period.pdf

43)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중국, 홍콩,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44)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부탄,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사바도르, 에스토니아, 조지아, 가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일본, 요르단,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르코, 모잠비크, 니콰라과,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 뉴 기니 ,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잠비아.

45) 유럽특허청(EPO)은 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과 관련된 명백한 해악이나 출원인이나 그의 법적 승계인에 의하여 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제박람회에 발명이 전시된 경우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 특허출원은 선행기술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6) 유라시안 특허 기구(EAPO)는 발명자나 출원인 또는 발명자나 출원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

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47]는 공지예외적용기간을 6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48]는 공지예외적용기간을 12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걸프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특허청(Patent Office of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GCC Patent Office)은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용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박람회에 발명이 전시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 등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공지예외적용제도의 개선 방안

1. 취지 및 증명서류 제출기간

가. 문제점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또 출원일로부

을 하면 특허요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지가 고려대상이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음).

47) 영어권 국가들의 단체인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 기구(ARIPO)는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 의하여 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제박람회에 발명이 전시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8) 불어권 국가들의 단체인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OAPI)는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과 관련된 명백한 해악이 있는 경우나 출원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 의하여 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제박람회에 발명이 전시된 경우 그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49]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침해소송을 당한 자는 그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허권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선행기술을 찾아내고자 한다. 선행기술이 특허출원 전 공지된 발명인 경우 침해소송을 당한 자는 이를 가지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전 공지를 한 발명자에게는 개정된 특허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 규정인 셈이 된다.

나. 개정 방안

미국 특허법은 특허출원을 한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공지한 후에도 그 발명을 특허출원 전에 공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특허법은 발명자가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출원인이 따로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공지와 관련된 증명서류도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도 특허법의 공지예외적용과 유사한 제도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두고 있는 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49)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절차가 필요가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특허법상 진보성과 유사)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ⅰ)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ⅱ)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함)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거나, (iii)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와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50] 즉,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과의 차이점은 디자인권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51]와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5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51) 디자인보호법은 문구류나 의류 등 유행을 타는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창작비용이성 중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선출원주의 등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2006년 이전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었으나

를 제출할 때에 그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처럼 공지예외적용 기간만 준수하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법을 모를 수 있는 발명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그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특허법 제30조 개정안〉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3. 제133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현재의 특허법은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제도나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공지예외적용주장 기간의 기산일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1년 이내의 특허출원은 실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은 실제출원일이 아닌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인 경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일인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은 유효출원일인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발명의 공지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적용(Grace Perio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도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허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된 경우 그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그 특허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중국에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은 그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즉, 실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본과 유럽의 특허법과 동일하나,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이나 중국의 특허법과는 차이가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의 초안에서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52] 또 일반적인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률이 우리나라 발명자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특허출원 기간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허법을 유지하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논의와 다른 국가들의 개정 방향의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 특허법을 개정할 것 제안한다.

3.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 제외

우리나라 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신규

52) 정차호, 앞의 논문, 49면.

성 상실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는 여기의 공개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유럽 및 중국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지예외적용 기간의 기산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 제외 규정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명자보다는 외국의 발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중국과 유럽의 특허법은 공개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특허법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추이를 치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Ⅳ. 결론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한 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의 무효사유로서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을 찾고자 노력하고, 그 증거로서 특허출원 전 공지기술이 있는지를 검색한다. 여기서의 공지기술은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지기술 뿐만 아니라 발명자 본인이 특허출원 전에 직접 공개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권과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은 바로 발명자 본인이 특허출원 전 공개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주는 것이지만, 특허출원 전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지예외적

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공지예외적용제도를 알아야 한다.

IP5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중국은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유럽은 명백한 해악(evident abuse)인 경우와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경우,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절차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발명자가 이러한 공지예외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잘 이해하고 또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을 보면,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할 때에 공지예외적용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발명자가 이러한 공지예외적용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러한 절차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불이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의 기간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허권침해소송을 당한 자가 제기하는 무효심판인데, 개정된 특허법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에서처럼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공지예외적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면 발명자가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발명진흥회, 「중국전리심사지침」, 발명진흥회, 2007

신혜은, 「복수공지행위시 공지예외주장의 효력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3

이해영, 노지준, 권순익, 「미국 개정 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2019

김 용,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신규성의제 주장)”, 「발명특허」 제34권 제5호, 한국발명진흥회, 2009

김태수, “한 중 특허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박태일,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취지를 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1. 6. 9. 선고2010후353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37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2

신혜은, “발명의 공지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공개행위의 밀접불가분성”, 「산업재산권」 제4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이영우, “특허실체법조약협상에 있어서 신규성의제 혹은 Grace Period의 문제”, 「발명특허」 제28권, 한국발명진흥회, 2003

이준서, “신규성이 없다는 특허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대한토목학회지」 제55권, 대한토목학회, 2007

정차호, “IP5 특허청의 본인공개예외(Self-Disclosure Exception)제도”,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조재신, “한·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2(3),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최승재, “신규성 의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판결”, 「IT와 법연구」 제6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 2012

홍정표, “공지예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2018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MPEP), 2018
https://ipcopy.wordpress.com/2013/10/04/steve-jobs-a-keynote-video-and-usde-grace-periods/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205.pdf
http://www.sipo.gov.cn/zhfwpt/zlsqzn/sczn2010eng.pdf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index.html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cp/en/national_laws/grace_period.pdf
日本 特許庁,「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2018
吉藤幸蒴,「特許法概說(第13版)」, 有斐閣, 2005

[Abstract]

A Study on Grace Period for Patents

Yoon, Gi-Seung
Lectur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the original patent system, there is a first-to file rule and a first-to invent rule. Despite a first-to invent rule being the most ideal system, most countries are taking a first-to file rule because of the management or the dispute of the patent. And in order to protect those who disclosed the invention before the patent application, the Korean Patent Law has a Grace Period. In order to receive such Grace Period, the patent application must be filed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that the invention was published

and a patent applicant shall file a patent application to that effect and submit documents evidencing the relevant fac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application.

In this case of a cane ice cream, a patentee having the patent right related to cane ice cream did not follow the related procedure at the time of filing a patent and at last the patent right was invalided. But this is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atent system granting rights in exchange for disclosure.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view that such a system is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inventor, the Korean Patent Law was revised so that if a patent applicant submit the effect and documents evidencing the relevant facts within (1) the period during which amendment is permitted or (2) a period of not more than three months from the date when the certified copy of a written decision to grant a patent or the certified copy of a written judgment to revoke the decision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is served, the patent application can be receive the Grace Period.

However, this revised patent law does not really help patentees. This is because the inventors do not actually know the system and the revised patent law is in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 not to prescribe the time when the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like the United States or to follow the procedure at the time when the patentee submits a written reply to a petition for an administrative patent trial like the Design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is study also aims to introduce the foreign system related to the Grace Period so that the inventors do not cause unjustifiable damage because they do not actually know the Grace Period system which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Key words : Grace Period, Non-prejudicial disclosures, Inventions not Deemed to be Publicly Known, etc., Novelty, effective filing date